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직 · 휴업) 안내문

I 추진 방향

-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직, 휴업)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1. 휴직

-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해야 함(예시 : 3.1~3.31 또는 3.10~4.9)
 - (장점) 서류가 비교적 간단, 인원제한 없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총액의 2/3 지원함.
 - (단점) 반드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해야 함.

2. 휴업

- 근로자가 격일, 격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실수 있으나, **고용유지 해당월에 전체 근로자의 휴업 규모율이 20%를 초과**해야 함.

* (휴업규모율) 휴업 해당월의 휴업, 단축근로 실시 전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 대비 휴업, 단축 실시 후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해야 함.

(예시) 2024년 1월에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 2024년 1월>의 휴업전 정상근무시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과 휴업, 단축을 실시한 후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단축한 근무시간이 20% 이상이어야 함.

- (장점) 긴급하게 출근해야할 때 전날까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출근할 수 있음.
- (단점) 서류가 비교적 복잡함(규모율 산정 등).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해야함(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100%)으로 지급)

* (통상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비(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지급시)

*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평균(기본급, 각종수당(초과수당, 주말수당 등 포함)
+ 상여금(지난 1년분의 1/4) + 연차수당(지난 1년분의 1/4)

※ 휴직의 경우 휴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정액제 지급 가능

II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한도) 1일 6만 6천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2 지원대상

-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본사(법인) 단위)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어야 함
 - * '24.1.1.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아래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여야 함, "기준 달"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②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 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이 **90일 경과한 근로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①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피보험자격이 90일 이하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 시 지원 제외

3 지원제한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 직후 1개월까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고용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을 의미
- (**계획 미이행 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조치 대상자 수·실시기간·**지급금품*** 중 어느 하나를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지원 제한
 - * **지급금품**: 임금보전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한 금품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많이 지급한 인원 비율로 이행여부 판단

- (고용보험료 체납시 제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제한(단, 지원금 신청 기한 내 고용보험료 완납 후 신청 시 지원 가능)
- (신규채용시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한 사업주에 대해 해당월 지원 제한
- (반복 신청시 제한)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제한
- (고용조정 이력에 대한 제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2년 이내 기간 중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월)에 대해 해당 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을 한 경우, **금번 지원 제한**

※ '24.7.1.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

※ '24.8.1. ~ 8.31.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경우, 이전 2년('22.8.1.~'24.7.31.) 기간내

(사례1) 과거 고용유지조치가 '23.1.31.종료<신규 개시일까지 6개월 이상>

- '23.1.31.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23.2.1.~'23.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22.8.1.	'23.1.31.	'23.2.1.	~	'23.7.31.	'24.7.31.	'24.8.1.
		~ 고용유지 조치 종료일	고용유지 장려기간*(6개월) 피보험자 10% 고용조정 시 차기 지원 제한				신규 고용유지 조치시작일

* (고용유지 장려기간) 이전 2년 동안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의 종료일 이후 6개월 기간

- 단, 신규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을 의미하며, 동 기간 내 고용조정된 피보험자 수로 신규 고용유지조치 지원 제한 판단

(사례2) 과거 고용유지조치가 '24.4.30.종료<신규 개시일까지 6개월 미만>

- '24.4.30.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24.5.1.~'24.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22.8.1.	'24.4.30.	'24.5.1.	~	'24.7.31.	'24.8.1.	'24.10.31.
		~ 고용유지 조치 종료일	고용유지 장려기간 피보험자 10% 고용조정 제한('24.5.1.~24.10.31.(6개월)			신규 고용유지 조치시작일	

④ 기타 요건

- (근로자 확인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서 3년간 사업장 비치

※ '24.2.20.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

III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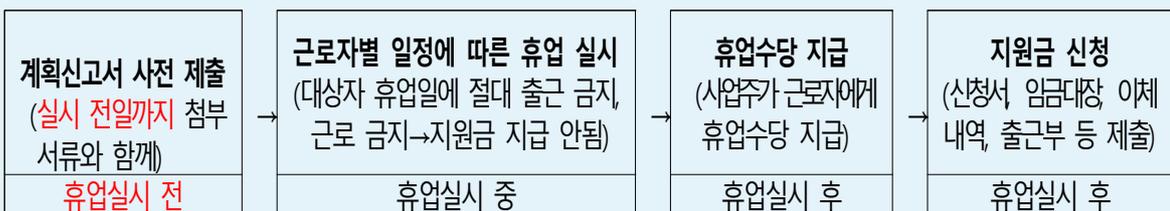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or.kr)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용유지유급휴업
- ② (우편) (4826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5층 기업지원팀(광안동,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③ (FAX) 051-719-4530

※ 『휴업 계획신고』 시 제출서류 안내

-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 + ①대상자 명단 1부<붙임1> ②근로자 확인서(대상 근로자 모두 작성) 사본 각 1부<붙임1> + ③노사협의회 사본 1부<붙임2>
- ② 유의사항 안내문 +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 사본 1부 <붙임3>
- ③ 매출액 대비표 1부<붙임4> + 매출증빙자료 1부
 ○ 매출액 현황(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확인증명원>, 홈텍스, POS 확인 등 증빙자료)
- ④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 휴일, 임금부분 발췌,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⑤ 직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1부
 ○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휴업 실시 전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 대장 사본
- ⑥ 작성요령

👉 신청 절차 (* 최초 신청시 실시 7일전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및 신고서 제출 희망)



붙임 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작성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2. 29.>

2024년 제1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주	대표자 성명 홍 ◇ ◇ 사업자등록번호 606-00-00000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8****-1***** 상호명(법인명) 주식회사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606-00-00000-0 ②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소재지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123 담당자 성명 김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d@efg.com
③ 파견·수급사업장인 경우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
④ 신청자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금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달의 근로시간	⑤ 소정근로시간 ⑥ 연장근로시간 (반복적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⑦ 총근로시간(⑤+⑥)	880시간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3개월 평균 시간 시간 시간 시간 880시간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⑧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2024.8.1~8.31. (22일) ⑩ (8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2명 ⑫ (8월) 단축한 근로시간 218시간 ⑭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평균임금 70% 지급	⑨ (8월) 전체 피보험자 수 5명 ⑪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662시간 ⑬ 근로시간 단축률 24.8%
⑮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지 작성 가능) 경기불황으로 2024.7월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8%감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신고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약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 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결재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⑩ 2024 년 8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번호	성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주민등록번호	실근무장소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박□□ 851201-1*****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일자																	(일) 13 (기존 근로시간 수) 176 (단축시간 수) 96		
			기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단축시간	14:00~18:00	14: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4	4			8	8	8	8	8	8			8	8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8
			단축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8	8	8	8	8			8							
2	이△△ 810912-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길 ××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17 (기존 근로시간 수) 176 (단축시간 수) 122		
			기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단축시간	14:00~18:00	14: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4	4			8	8	8	8	8	8			8	8	8	8		8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존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단축시간	14: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시간 수)	4				8	8	8	8	8			8	8	8	8	8		8	
계																		2명				

⑪ 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 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보험료 체납 상태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다.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100분의 5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 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해당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하려는 금액의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신고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2024 년 7 월 30 일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흥 ◇ ◇ (서명 또는 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인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용(도급)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용(도급)사업장에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항을 '예'와 '아니오'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⑩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 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⑥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연장근로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 동안의 연장근로가 반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각 달의 연장근로시간과 3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⑦란은 ⑤란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⑥란 중 3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 '20. 3. 1. ~ '20. 3. 31, 22일)
9. ⑨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관계의 근로자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10. ⑩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11. ⑪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1개월)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할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⑫란은 ⑦에서 ⑪을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3. ⑬란은 (⑫/⑦)×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14. ⑭란은 ⑫의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15. ⑮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증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6. 2쪽 ⑯란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조치계획 내용을 적되, '기준시간'은 각 일자별 근무시간대(소정근로시간 + 반복적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 수를 적고, 아래의 '단축시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근무를 면제받는 시간대 및 시간 수를 적습니다.
17. 2쪽의 ⑰란은 사업주가 지원제외 사항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처리절차



■ [별지 제7호서식] <2024.2.20.>

고용유지조치(휴업)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본인은 (주식회사 △△)의 경영난으로 인한 (2024년 8월)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명	박□□	근무 부서 (실근무장소)	관리팀 (부산수영구 수영로 0000)
주민등록번호	851201-1*****	근로계약기간	2023.1.1. ~ . . .
연락처	010-0000-0000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대)	1일 8시간 (9시 00분~ 18시 00분)

고용 유지 조치 계획	○ (2024년 8월) 고용유지조치계획 1) 2024.8.1. ~ 2024.8.31. 기간내 휴업 조치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휴업 시간	14:00 18:00	14: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업 시간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지급 금품	2) 상기 휴업시간에는 일체의 근로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3) 개인사정(질병, 사고, 가사사정 등) 및 산재로 인한 휴업이 아님을 확인하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을 시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협의	○ (24년 8월)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금품으로 (평균 임금 70%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금 보전 금품 산출내역: 휴업 112시간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8시간 × 70%) = 1,176,000원																
부정 수급 처분	○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지급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계획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해당자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기 지급분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부정수급액 기준 1년 범위 내 장려금 지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 해당 고용유지조치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처분 등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사용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7 월 30 일

확인자(근로자) 박□□ (서명 또는 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았으며, 동 확인서를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7 월 30 일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

붙임 1-4

휴업 대상자 명단(작성예시)

2024년 제 1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 휴업대상자 명단

■ 계획(변경)신고 일자 : 2024년 7월 31일, ■ 고용유지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일요일→ 주(주휴일), 유급명절, 유급휴무일, 유급 하기휴가일 등→ 약(약정), 휴업 → 8(휴업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근무자는 7) 출근→ 0(정상근로)

번호	날짜 이름	1							2							3							계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1	박□□	4	4			8	8	8	8				8	8						8	8	8	8				8					96
2	이△△	4	4			8	8	8	8				8	8	8		4				8	8	8	8			8	8	8		124	
3	김△△	4	4			8	8	8	8	8		주	8	8	8	약	8		주		8	8	8	8			8	8	8		136	
4	홍△△	3	3			3	3	3	3				3	3	3	약	3		주		3	3	3	3			3	3	3		51	
계	4명	15	15			27	27	27	27	8			27	27	19		15				27	27	27	27			27	19	19		407	

* 휴업대상자 중 시간제근로자(3명): 김한국(9:00~12:00, 3H), 이대환(9:00~12:00, 3H), 박민국(9:00~12:00, 3H)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 1일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시 ~ 몇시까지 단축을 하고 몇시 ~ 몇시까지 출근을 하는지 반드시 기재 요망
 (예) 3월 4시간 단축이면 전체 근로시간 09:00~18:00: 그 중 09:00~14:00까지 출근, 14:00~18:00까지 단축근무 실시 (매일 변경 인정안됨)

붙임 1-4

휴업 대상자 명단(작성예시)

* 일요일→ 주(주휴일), 유급명절, 유급휴무일, 유급 하기휴가일 등→ 약(약정), 휴업 → 8(휴업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근무자는 7) 출근→ 0(정상근로)

㉑ 2024 년 8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번호 실근무장소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일자 요일	1 목	2 금	3 토	4 일	5 월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11 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31 토				
1	박□□ 851201- 1***** 세종시 한누리대 로 422	기존시간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일) 13 (기존 근로 시간 수)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176 (단축시간 수) 96		
		단축시간	14:00 18:00	14: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시간 수)	4	4			8	8	8	8				8	8								8	8	8	8			8								
2	이△△ 810912- 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X길 XX	기존시간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일) 17 (기존 근로 시간 수)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176 (단축시간 수) 124		
		단축시간	14:00 18:00	14: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14: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시간 수)	4	4			8	8	8	8				8	8	8	약 4					8	8	8	8				8	8	8						
3	김△△ 880810- 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X길 XX	기존시간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일) 18 (기존 근로 시간 수)		
		(시간 수)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176 (단축시간 수) 136		
		단축시간	14:00 18:00	14: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09:00 18:00						
		(시간 수)	4	4			8	8	8	8	8		주	8	8	8	약 8			주		8	8	8	8				8	8	8						
4	홍△△ 890910- 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X길 XX	기존시간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일) 17 (기존 근로 시간 수)		
		(시간 수)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66 (단축시간 수) 51		
		단축시간	9:00 12:00	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9:00 12:00			주		9:00 12:00	9:00 12:00	09:00 12:00	09:00 12:00			9:00 12:00	09:00 12:00	09:00 12:00	09:00 12:00					
		(시간 수)	3	3			3	3	3	3				3	3	3	약 3					3	3	3	3			3	3	3							
5	계	기존시간																																			
		(시간 수)																																			
		단축시간																																			
		(시간 수)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 “휴업 대상자 명단” 작성요령

- **휴업 및 근로 현황 표시:** 일요일-주(주휴일), 명절, 격주토요일휴무, 하기휴가-약(약정휴일), 전체휴업-8(소정근로시간 휴업), 출근-0(정상 근로)
 - 휴업은 사업장 전체 휴업이 아닌 일부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쉬는 부분휴업도 인정합니다.
 - 따라서 휴업지원금은 근무하여야 하는 날을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하여 2/3(우선지원기업), 1/2(대규모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그 근로자가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휴업한 경우 휴업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등(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처음 휴업계획 신고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사본을 1부 제출)
- **주휴일:**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일반 월~금 출근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로 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 사업장 운영형태에 맞춰 휴업계획자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휴무일:** 휴업계획 해당 월에 포함된 유급근로자의날, 유급토요일, 유급휴가일, 유급공휴일(추석, 신정, 구정 등) 등 유급휴일의 해당일을 기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제출 사업장 유의사항 안내

-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반드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귀 사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 준수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② **휴업의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 근로한 시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실제 휴업한 날이나 단축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보존을 위해 휴업수당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③ **휴업의 경우**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지원금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은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는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은 매월 신고해야 하며, 1개월 단위(실제 실시한 날 기준 예시: 3.10.~4.9.)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1개월 단위)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 ⑥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등기야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⑦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휴업·휴직수당 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⑨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⑩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실제 휴업, 휴직 이행 여부를 **매월 불시에 점검**합니다.
- ⑪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휴업기간 동안 **근로시간 관리(전자·기계적인 장비로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부 작성)**를 하여, 지원금 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⑫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 . .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

- ◆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사업주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1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 ②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7조(사기)>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거짓 제출
-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거짓 신고
-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 등의 거짓 작성 및 신고
- ④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거짓 작성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붙임 4

매출액 대비표(작성예시)

- 아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되며,
- 본 자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시 활용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달: (유급) 휴업 시작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예: 2024.8.1. 휴업 시작 시, 기준 달은 2024.7월)

○ 기준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단위: 백만원)

기준 달의 직전 6개월							직전 6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달 (2024.7월)	감소율
2024.1월	2024.2월	2024.3월	2024.4월	2024.5월	2024.6월				
85	60	65	75	45	50	63.3	45	28.9%	

※ 감소율 계산식: $(63.3 - 45) / 63.3 \times 100 = 28.9\%$

○ 기준 달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이 계속 감소 추세

(단위: 백만원)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직전 6개월)								기준 달 (2024.7월)	감소 여부 A>B>C
3개월(분기)				3개월(분기)					
2024.1월	2024.2월	2024.3월	Ⓐ 월평균	2024.4월	2024.5월	2024.6월	Ⓑ 월평균		
85	60	65	70	75	45	40	53.3	40	감소 A>B (23.9%) B>C (25.0%)

※ 기준 달의 직전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 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감소율 계산식: [A > B] $(70 - 53.3) / 70 \times 100 = 23.9\%$
 [B > C] $(53.3 - 40) / 53.3 \times 100 = 25.0\%$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이 부지급, 지급제한 또는 환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 * 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집계표 등)를 제출
-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달의 매출액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 확정 후 보완조치

참고

근태 기록부

(202)년 ()월 근태기록부

사업장명 :

근로자 (인)

관리자 (인)

* 단축근무일 경우는 근무한 출근여부에 “근무시간 기재”, 전일 휴업일 경우에는 “휴” 기재, 주휴는 “주” 기재 주휴일 빼고 원래 휴무일에는 “약” 으로 기재

일자구분				1	2	3	4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일자구분	5	6	7	8	9	10	11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일자구분	12	13	14	15	16	17	18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일자구분	19	20	21	22	23	24	25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일자구분	26	27	28	29	30	31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일자구분							
요일(변경불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업 여부							
출근시 근무시간							

월 초과근로시간

* 휴업기간을 실시하는 월에는 출근을 해하 함에도 휴업으로 쉬었다는 뜻으로 휴업을 기재하시는 등 출근체크를 하고 지원금 신청시 출근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